

한국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양성 존중 가치 향상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강 한 별 이 상 은 홍 소 은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석사과정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점차 다른 인종, 민족, 성적 지향성, 종교 등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심리상담 분야에서도 내담자의 다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본 논문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심리상담 분야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윤리강령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상담 윤리강령을 1) 비밀보장, 2) 사전 동의, 3) 선물, 4) 상담종결 및 의뢰, 5) 수퍼비전 6) 심리 평가 영역에서 한국의 것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성 관련 윤리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밀보장, 종결 및 의뢰, 수퍼비전 등에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한 윤리강령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상담 윤리강령의 원칙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다양성, 다문화, 심리상담 윤리강령, 상담윤리, 국제 비교 연구

[†]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5월 21일은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다. UN은 2002년 이 기념일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를 존중 및 개발함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시도해왔다. 한국은 2014년 ‘문화 다양성법’을 제정한 이후 2015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을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에도 6 번째 문화 다양성 주관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는 한때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신화와 단일 언어 등 동질적인 문화를 당연시해왔다(장인실, 김경근, 모경환, 민병근, 박성혁, 2012). 한국의 순혈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교과서에도 담겨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왔지만, 2007년 UN이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특성을 인정하고 민족 동질성 이미지를 극복해나갈 것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국민일보, 2015; MBC, 2007). 한국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등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김종세, 2011),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등(여성가족부, 2015)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획일적인 문화에서 다른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가치관 등의 문화에 개방적인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의 증가는 통계적인 수치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중이 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동아일보, 2019). 2019년 12월 말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였다(연합뉴스, 2020). 한국의 고유한 다문화 인구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12년 이후 입국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 3월까지 누적 33,000명 이상이 입국하였다(통일부, 2020). 이처럼 한국 내에 다양한 국적, 인종, 종교, 가치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모습과 달리 여전히 우리나라 주류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최윤정 외, 2019)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등 가운데 약 30.9%가 1년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하였고 응답하였다. 김석향(2019)의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일상적인 괴롭힘의 희생자가 되는 사례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종교로 인한 공격과 차별도 존재한다.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한국인 무슬림도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데, IS 테러 이후 무슬림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월간중앙, 2016). 한국 다문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은 아직 한국이 개인의 다양성 존중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과 같은 용어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다문화라는 용어가 여전히 민족과 인종에 국한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문화에는 인종

과 민족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성, 장애 등이 포함되며(김중혁, 황기식, 송문석, 2019) 그 외에도 Lee(2014)는 상담에서 연령, 성적 지향, 사회계층 등을 고려해야 할 다문화 관련 문제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종과 민족 외에 언어,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연령, 사회계층, 가족형태,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다문화를 다루고자 하며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심리상담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내담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심은 내담자의 개인적 성장과 심리적 안녕을 최우선 하는 심리상담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진령(2005)은 다양한 국적, 인종, 성적 지향, 장애, 종교 등을 가진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연구는 1993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1-3편의 연구만 진행되다가 2007-2008년을 기점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하였고(김춘희, 손은령, 2014) 더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최미, 오은경, 최한나, 2016)도 2016년까지 최근으로 올수록 다문화 상담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국내 인구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하여 상담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내담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상담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상담자들의 역량과 준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획일화와 단일화가 중시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상담자들은 다양성을 체험하기 어려워 다문화적 시각을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김춘희, 손은령, 2014), 실제로 상담자의 다양한 내담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예를 들어, 다문화 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담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희, 2017). 상담자의 탈북주민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조영아, 방기연, 2010)에서 상담자는 탈북 주민에 대한 우월감과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상담에 실패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편견을 감소시키는 등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Constantine(2002)에 따르면 민족적 소수자인 대학생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이 일반적인 상담 역량을 넘어서서 상담 만족도의 많은 변량을 설명한다. 또한,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의 다문화 지향성이 작업 동맹과 내담자의 심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Owen, Tao, Leach, Rodolfa, 2011). 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내담자가 지각한 인종적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은 백인 상담자와의 약한 치료적

관계를 예측하였다(Constantine, 2007). 그럼에도 국내 상담자들은 교육과 수련 과정 중 스스로의 편견을 윤리적으로 고찰하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등이 다른 내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증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자, 상담교육자, 상담 연구자, 슈퍼바이저 등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들이 내담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윤리강령이 부재하다.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상담자들이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침(guidance)을 제공하고(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전문적인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준다(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2017).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윤리강령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다양성 존중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모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상담자가 취해야 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안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상담 영역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담론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상담 분야에서도 내담자의 다양성을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는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성적 지향을 공개하고,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상담사는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였고, 해당 군인이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아시아경제, 2019). 이와 관련하여 상담사의 비밀유지 윤리 위반, 동성애와 관련한 군형법 등에 대한 논란이 불어졌

다. 한국의 대표적인 윤리강령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다양성에 대한 윤리강령을 재정비하는 것은 상담 분야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양성을 둘러싼 사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다양성과 관련한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방향성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 장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앞서 이루어진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양성 관련 윤리강령이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의 역사가 길고 그만큼 다른 국가의 상담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다양성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일찍부터 다문화 국가를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윤리강령과 한국의 것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다양성 윤리강령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할 것이다.

북미 다문화 관련 윤리 규정의 변천사와 방향

미국

상담영역의 오랜 역사를 통해 상담의 전문화를 이룩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담영역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담 윤리강령은 많은 국가의 상담 영역에 영향을 미쳐왔다(Sinclair, 2020). 미국 상담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는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2017

년 여름, 미국상담협회 이사회는 사회정의와 인권에 관한 세 가지 성명을 승인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7): (1) 기본 인권: 개인의 성적체성과 일치하는 공중 화장실 이용을 지지함, (2)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 (3)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위와 같은 성명은 ACA 상담윤리강령이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형평성이 사회적 가치 사이의 공정한 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지양하는 다양성 추구는 ACA 상담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ACA 상담윤리강령은 1952년 첫 미국상담협회인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APGA, 현재 ACA)의 설립 이래로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상담윤리강령의 개정이 거듭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 내용이다. 여기서는 ACA 상담윤리강령의 변천에서 따라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1년 APGA의 첫 번째 윤리강령에서는 다양성이나 다문화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차, 3차 개정을 거치면서 다양성과 관련한 내용이 부수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측정 및 평가 영역에서 다양한 내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상담자들의 차별이 상담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윤리강령의 4번째 개정인 1995년 ACA 상담윤리강령에 이르러서야 다문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Watson, Herlihy & Pierce, 2006). 1995년 ACA 상담윤리강령 서문에는 “미국상담협회 회원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각 개인의 가치, 존엄성, 잠재력, 고유성에 바

탕을 둔 문화 간의 다양한 양식을 수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ACA, 1995, p1), 상담규정의 전반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13가지의 규범이 제시되어 있다(Watson et al., 2006).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윤리강령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동서양의 관점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ACA 회장으로 재임한 David Kaplan은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윤리강령을 개정하였다(Kaplan et al., 2009; Kocet, 2006; Watson et al., 2006). 상담윤리강령 개정의 주목적은 다문화 감수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가? (2)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령 중 제외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기반하여 2005년에 다양성을 지향하는 ACA 상담윤리강령(2005)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상담윤리강령에는 “다문화/다양성 역량” 조항(F.11.c)이 추가 되었는데, 이 조항에서는 상담교육자들이 다문화 및 다양성 역량을 수련, 슈퍼비전 및 모든 교육 과정의 전반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Kaplan et al., 2009). 여기서는 상담에서 권력·특권·이념으로 인한 갈등(예: 성차별,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등)이 발생할 때 심리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문제를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5년 개정안에는 다양성 관련 내용을 특정 다룬 영역 외에도 사전 동의, 슈퍼비전, 선물과 관련한 윤리강령

전반에 다문화 및 다양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ACA 상담윤리강령의 개정은 미국의 상담 영역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 가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개정 관련 인터뷰에서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이 우리 삶의 전반과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이것은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언급했다(Kaplan et al., 2009). 이는 ACA가 지향하고 있는 상담윤리 내 다양성 존중의 방향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캐나다의 상담 및 심리 윤리강령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은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져 왔다. 캐나다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해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선언했으며, 다양성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다문화주의를 정책이념으로 택했다(Ng, & Metz, 2015; Esses & Gardner, 1996). 1970년대 중반부터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며 다민족 국가로 성장했고, 이후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1982)과 다문화주의법(1988) 등을 통해 다문화의 영역을 여성, 종교, 장애 등으로 확대하며 다문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룩해왔다(경향신문, 2016). 이러한 캐나다의 다양성 지향성은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먼저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이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상담의 사회적 책임으로(CCPA, 2017, 2020). 상담과 사회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상담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은 캐나다 사회의 여러 이면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의 사회·문화의 주요한 특징인 다문화적 요소를 강조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윤리강령이 다문화 상담 윤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여 다문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Canadia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의 상담윤리강령(Sheppard, Schulz, & McMahon, 1999)과 그 다음 개정안(2007)에서는 다문화 관련 사항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자와 심리치료사의 책임 영역에서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CCPA, 2017, A.10), 상담관계 영역에서도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CCPA, 2007, B.9). 또한 평가 영역에서도 다양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CCPA, 2007, D.10). 최근 개정된 CCPA 상담윤리강령(2020)에는 다문화 및 다양성과 관련하여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2차 개정에서는 다양성 이슈를 부수적으로 다루었던 데 반해, 3차 개정안에서는 다양성에 강조점을 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CCPA 상담윤리강령의 서문에는 개정의 주요 목표로 ‘토착민과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고려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캐나다 윤리강령은 여러 다양성 중에서도 민족 다양성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윤리강령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는 토착민과 지역, 맥락을 다루는 영역(I. Indigenous Peoples, Communities and Contexts, p.30)이 따로 추가된 것이다.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토착민과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상담자의 자기 성찰과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더불어, 상담관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체계가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CCPA(2020)의 다양성이 민족 구성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CCPA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p.33), 다양성은 나이와 세대, 성별, 생물학적 유산/유전, 민족(문화 포함)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차이를 말한다. 즉 여기서의 다양성은 개인의 민족적 소속, 문화적 배경(인종적 신념, 관습, 전통), 지리학적 역사, 언어적 배경, 관계적 성향, 종교 지향성, 교육적 지위, 직업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 건강, 신체적 건강(장애), 학습 능력, 지적(장애) 능력에서의 차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이다. CCPA(2020)는 이러한 다문화 정

의에 의거하여, 상담자 역량, 상담 관계, 평가, 슈퍼비전, 연구 영역에 걸쳐 상담자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감수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상담윤리강령에서의 다문화 및 다양성 지향은 상담자들이 인구 및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인식하여, 사회정의, 자기성찰, 다원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역별 다양성 윤리강령 비교¹⁾

표 1과 같이, 국내 윤리강령은 약 6가지의 영역-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심리검사, 상담 연구, 그리고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에서

표 1. 한국과 북미 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내 다양성을 포함한 영역

한국상담심리학회(KCPA)	한국상담학회(KCA)
1. 전문가로서의 태도	제3장: 내담자의 복지
2. 사회적 책임	제6장: 상담연구
3.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제7장: 심리검사
6. 심리평가	
7.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미국상담학회(ACA)	캐나다상담심리학회(CCPA)
A. 상담관계	A. 전문적 책임
B.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B. 상담 및 치료의 책임
C. 전문적 책임	C. 사정과 평가
E. 평가, 사정, 해석	D. 연구와 번역
F. 슈퍼비전, 훈련 및 교육	E. 임상 슈퍼비전
H. 원격상담, 기술, 소셜미디어	I. 토착민, 지역공동체, 그리고 맥락

1) 교신저자 : 영역별 다양성 윤리강령 비교의 대상은 KCPA의 2018, KCA의 2016, ACA의 2014, CCPA의 2020년도 윤리강령이다.

다양성 혹은 다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CA와 CCPA도 대략 6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ACA는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B. Confidentiality and Privacy)’와 ‘원격상담, 기술, 그리고 소셜미디어(H. Distance Counseling, Technology, and Social Media)’ 영역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CCPA의 경우 ‘토착민, 지역공동체, 그리고 맥락(I. Indigenous Peoples, Communities, and Contexts)’ 영역을 통해 다문화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다문화 또는 다양성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영역 내 ‘다양성 존중’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하지만 1) 비밀보장, 2) 사전 동의, 3) 선물, 4) 상담종결 및 의뢰, 5) 슈퍼비전, 6) 심리평가에서도 다양성 이슈는 언급되고 있으며 북미 윤리강령과 비교 시 영역 또는 세부내용 상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영역별 다양성 윤리강령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주요 학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밀보장과 상담종결 및 의뢰 영역에서는 ACA, 사전 동의 영역에서는 KCPA, KCA, ACA, 선물 영역에서는 KCPA, ACA, 슈퍼비전과 심리평가에서는 하위 영역들 간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주요 학회들 모두 다양성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해당 6가지 영역들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관련한 한국과 북미의 윤리강령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안적 조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안적 조항은 영역별 기존 윤리강령 유무와 내용의 다양성 요인 반영정도에 따라 신설 또는 개정으로 구분되었다. 기존의 관련 윤리강령이 부재한 경우 신설 조항을 제시하였고, 관련 윤리강령은 존재하나 다양성 요인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다양성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어 현행 조항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표 2. 영역별 다양성 언급 국가 비교

영역	국가(협회)	
비밀보장	미국(ACA)	
사전 동의	한국(KCPA, KCA), 미국(ACA)	
선물	한국(KCPA), 미국(ACA)	
상담종결 및 의뢰	미국(ACA)	
슈퍼비전	다문화 역량 교육	한국(KCPA, KCA), 미국(ACA), 캐나다(CCPA)
	슈퍼비전 관계	미국(ACA), 캐나다(CCPA)
심리평가	평가전반	한국(KCPA, KCA), 미국(ACA), 캐나다(CCPA)
	평가 전	한국(KCA), 캐나다(CCPA)
	도구 선정	한국(KCA), 미국(ACA), 캐나다(CCPA)
	결과 보고	미국(ACA)

별로 대안적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각 대안적 조항들은 영역별 비교표(표 3-11)에 제시하였고 다양성 관련 표현은 고딕으로 표기하였다.

비밀보장(Confidentiality)

ACA는 영역 B에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B. Confidentiality and Privacy)를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타 영역들-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 심리평가, 연구와 출판, 그리고 원격상담, 기술, 소셜미디어-에서도 비밀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 영역 B에서 다문화 또는 다양성 고찰을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3). ACA의 해당 조항은 국내 윤리강령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상담자가 비밀보호와 정보공개에 대한 내담자의 관점과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 조항도 표 3에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가 증가하면서 비밀보장과 사생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타문화 출신임이 밝혀지기를 꺼리는 다문화 학생 혹은 북한이탈주민 내담자의 경우 이와 관련한 상담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밀보장 영역에서 다양성 관련 윤리강령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사전 동의에서 다문화 요소를 고려한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발달적 수준 또는 특성을 이해하고 사전 동의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한국상담학회(KCA)와 ACA는 표 4와 같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상담심리학회(KCPA)에서는 사전 동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화가

표 3. 비밀보장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	없음.
KCA	없음.
ACA(B.1.a)	상담자는 비밀보장과 사생활에 대한 문화적 의미 (cultural meaning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를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담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다른 관점 (differing views)을 존중한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정보가 공유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
대안적 조항	
KCPA (5.가.7 신설)	상담심리사는 비밀보장과 사생활에 대한 문화적 의미 를 인식하여야 한다. 상담심리사는 정보공개에 대한 다른 관점 을 존중한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들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정보가 공유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
KCA (3.9.6 신설)	상담자는 비밀보장과 사생활에 대한 문화적 의미 를 인식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다른 관점 을 존중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들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정보가 공유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ACA는 표 4와 같이, 사전 동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개인적 발달수준 뿐만 아니라 문화적 함의를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다양성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사전 동의에서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CPA 윤리강령과 비교하

여 ACA는 자발적인 동의가 어려운 내담자 혹은 미성년자와의 사전 동의에서 내담자 가족의 문화와 맥락 등 다양성을 고려하고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대안적 조항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회 내에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비율을 고려하여 KCPA와 KCA 윤리강령에서 추후에 다

표 4. 사전 동의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3.나.6)	상담심리사는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에 앞서 그 영향을 고려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KCA (3.9.2;3.9.3)	상담자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상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내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자나 번역자 를 배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CA (A.2.c;B.5.b)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발달적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상담자는 사전 동의와 관련한 문제들을 의논할 때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clear and understandable language)를 사용한다. 내담자가 상담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를 보장하는 서비스 (예, 적합한 통역자나 번역자 배치)를 제공한다. 내담자와의 협력에서 상담자는 사전 동의 절차의 문화적 함의 (cultural implications of informed consent)를 고려하며 가능하다면 상담자는 그에 따라 상담을 조정한다. 상담자는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상담자의 역할, 상담 관계의 비밀보장적 속성과 현재 법적, 양육권 관련 방식을 설명한다. 상담자는 가족의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에 따른 자녀의 복지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내재적인 권리와 책임을 존중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 및 보호자와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안적 조항	
KCPA (3.나.7 신설)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발달단계와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상담심리사는 사전 동의와 관련한 문제들을 의논할 때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 를 사용한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통역자나 번역자 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KCA	기존 조항(3.9.2, 3.9.3) 유지

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물(Receiving Gift)

선물과 문화적 배경 간의 관계, 문화별로 다르게 정의되는 선물의 의미가 논의됨에 따라, ACA는 선물 관련 다문화 윤리강령을 2005년에 처음 추가하였다. 상담자가 선물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며 선물 교환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KCPA 윤리강령도 선물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선물의 문화적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상담자가 선물 교환의 의미와 동기를 탐색하고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KCA 윤리강령에는 선물을

다루는 윤리강령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내 윤리강령에 보다 명확하게 내담자의 선물에 담긴 의미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표 5).

상담종결 및 의뢰 (Termination and referral)

상담 전문가도 개인으로서 고유의 가치관을 갖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행위를 탐색하고 통찰하는 과정은 중요하다(Shiles, 2009; Prilleltensky, 1997).

표 5. 선물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4.가.5)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KCA	없음.
ACA(A.10.f)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물을 수령하는 것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작은 선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임(token of respect and gratitude) 을 인식한다. 내담자의 선물을 받을지 결정할 때,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 선물의 경제적 가치, 선물을 주는 내담자의 동기, 선물을 수령하거나 거절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동기를 고려한다.
대안적 조항	
KCPA (4.가.5 개정)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특정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게는 작은 선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임 을 인지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KCA (4조에 신설)	상담자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특정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게는 작은 선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임 을 인지한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상담자와 내담자의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한국과 ACA 윤리강령 간에 차이가 있었다. ACA와 달리 KCPA와 KCA는 상담자의 개인적 가치에 따른 상담종결과 의뢰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았다.

아래 표 6과 같이 ACA는 상담의뢰의 이유가 오로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토대 위에 있다면 해당 의뢰를 삼가 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KCA 윤리강령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개인 문제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

를 적절하게 돕지 못하리라 판단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KCA, 1.2.2). KCPA 역시 상담자의 편견이 상담 과정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할 뿐(KCPA, 1.가.3), 구체적으로 상담의뢰나 종결이 차별적 요소를 지닐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수련과정에서 다문화 상담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표 6. 상담종결 및 의뢰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1.가.3)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 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KCA(1.2.2)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ACA(A.11.b)	상담자는 개인적 가치관, 태도, 신념, 행동만을 근거로 다른 전문가에게 내담자를 의뢰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 하고 특히 상담자의 가치관이 내담자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요소(discriminatory in nature) 가 있어 자신의 가치를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및 사례지도를 요청한다.
대안적 조항	
KCPA (1.가.3 개정)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 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종결 및 의뢰가 아닌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이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거쳐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KCA (9조에 신설)	상담자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 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종결 및 의뢰가 아닌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이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거쳐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ACA와 동일한 조항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있으며, 편견을 극복하는데 실패한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는 노력과 동시에 이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음을 대안적 조항으로 표 6에 제시하였다.

ACA도 지난 2005년 윤리강령과 달리 2014년 개정판에서 처음으로 상담자의 가치에 의한 종결 및 의뢰(Values Within Termination and Referral, ACA, A.11.b) 항목을 추가하였다. 상담 의뢰는 상담시작단계를 포함한 상담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상담의 시작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담자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담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능력의 한계(KCPA, 1.나.3; KCA, 1.1.2)와 구분되는 가치에 의한 상담종결 및 의뢰를 다루는 국내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퍼비전 (Supervision)

수퍼비전 영역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은 수퍼비전 자체와 수퍼비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과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Phillips, Parent, Dozier & Jackson, 2017; Green & Dekkers, 2010; Inman, 2006). 연구자들

은 수퍼비전에서 다문화적 정체성이나 관련 논쟁점을 깊이 다루는 것이 수퍼비전 성과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Phillips et al. 2017), 수련생이 수퍼바이저를 다문화적으로 유능하다고 인식할 때,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았다(Green & Dekkers, 2010; Inman, 2006). 하지만 수퍼비전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을 다루는 영역과 내용은 학회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 및 사회정의 역량 교육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Supervision)

다문화 역량 교육에 초점을 둔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이, 상담 교육자가 교육이나 훈련과정에서 수련생 또는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독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CCPA는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강조하고, ACA와 KCA는 수퍼비전에 다문화/다양성 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최근엔 이러한 다문화 상담역량(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을 넘어서서 다문화 및 사회정의 역량(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KCPA 역시 상담자 교육이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하는데 제 역할을 할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타 윤리강령 대비 비교적 적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담자의 문화

표 7. 다문화 역량 교육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7.라.2)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및 다문화적 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KCA(3.9.5)	상담자는 훈련이나 수련감독 실천에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킨다.

표 7. 다문화 역량 교육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계속)

학회	조항
ACA (F.7.c; F.11.c)	상담 교육자는 상담자의 발전을 위해 다문화/다양성 관련 내용 을 모든 교육과정에 도입한다. 또한 훈련이나 수퍼비전에 다문화/다양성 역량 배양을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킨다.
CCPA(E11)	임상 수퍼비전을 담당하는 상담자/치료사는 수퍼바이저의 자기발전과 자기인식을 촉진시킨다. 수퍼바이저들이 작업할 문화적으로 다양한 맥락에 민감하면서도(sensitivity to the culturally diverse context) 윤리적 및 법적 문제없이 유용한 방식으로 상담/치료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전문수련실습과 개인의 통찰을 통합하도록 돕는다.
대안적 조항	
KCPA (7.라.2 개정)	상담 교육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의 다양성 인식 증진, 다문화 및 사회정의 역량 향상 을 도모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개인적 통찰을 촉진하여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CA (3.9.5 개정)	상담자는 훈련이나 수련감독 실천에 다문화/다양성 및 사회정의 역량 배양 을 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수련생들이 이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킨다.

적 민감성을 증진하는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국내 윤리강령에 적용해 보면 표 7과 같은 대안적 윤리강령을 고려할 수 있다.

수퍼비전 관계 내 다양성 (Diversity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한편, 수퍼비전 관계를 다룬 윤리강령은 다양성 유무에 따라 학회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KCA는 수퍼비전 관계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KCPA는 다중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KCPA, 7.다). KCPA와 KCA 모두 수퍼바이저 또는 수련생의 개인적 특성과 다문화 역량이 수퍼비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퍼비전 관계가 수평적으로 발전된다고 보는 시각(Stoltenberg &

Delworth, 1987)과 달리,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바이저가 스승이나 선배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를 선호하고(최한나, 김창대, 2008), 상하관계 의식과 평가에 대한 염려 등의 이유로 자기개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손승희, 2005). 상하관계, 권력 차이에 대한 인식 등의 문화 및 맥락 요인이 우리나라 수퍼비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국내 윤리강령은 ACA와 CCPA와 같이 수퍼비전 관계에서 다양한 개인·문화적 맥락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심리평가 (Evaluation and assessment)

윤리강령에서 다루는 심리평가 또는 심리검사의 과정은 크게 5단계-평가 전, 도구 선정,

표 8. 슈퍼비전 관계 내 다양성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	없음.
KCA	없음.
ACA(F.2.b)	수퍼바이저는 슈퍼비전 관계에서 다문화/다양성의 역할 을 인식하고 다룬다.
CCPA(E12)	임상 슈퍼비전을 담당하는 상담자/치료사는 개인 및 직업적 신념과 가치, 문화적 요인, 발달 단계 등 슈퍼비전 관계를 호혜적으로(reciprocally) 형성하는 개인차에 대해 민감성과 반응(responsiveness) 을 드러낸다. 임상 슈퍼비전을 실시하는 상담자/치료사는 다양성 인식, 민감성, 반응 및 역량 강화 를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내담자,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담과 슈퍼비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성 측면 을 탐색한다.
대안적 조항	
KCPA (7.다에 신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 들이 수련감독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련 영향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KCA (13조에 신설)	상담자와 수련생은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 맥락 들이 수련감독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련 영향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채점 및 결과해석, 결과 보고, 그리고 진단-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도구 선정, 채점 및 결과해석, 그리고 진단 항목 사이에서 학회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고 모든 윤리강령에서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내담자의 사회적·문화적·상황적 특성과 더불어 정체성, 능력, 언어의 유창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KCA, 7.22.1; 7.24.3; 7.25.3; KCPA, 6.라.2; 6.마.1; 6.마.4; CCPA, C6; C10). 차이가 있었던 항목들은 평가 전, 도구 선정, 그리고 결과 보고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전 (Prior to assessment processes)

표 9에서 보듯이 KCPA와 KCA는 심리평가

전에 내담자에게 검사의 특성, 목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KCA와 CCPA는 내담자의 다양한 개인적, 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할 것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어, KCPA는 아래 표 9의 대안적 윤리강령과 같이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도구 선정 (instrument selection)

도구 선정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CCPA의 경우 검사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때 “적절한 편의제공 (Appropriate accommodation)”을 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KCA(7.22.3)도 검사도구 선정 시 문화적으

표 9. 평가 전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6.다.1)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 전에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구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용도, 비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KCA(7.22.4)	상담자는 검사 전에 검사의 특성과 목적, 잠재적인 결과, 수령자의 구체적인 결과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는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적·문화적 상황 , 내담자의 결과 이해 정도,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ACA(E.3.a)	상담자는 검사 전에 검사 특성, 목적,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때 상담자는 내담자 혹은 내담자를 대신하는 다른 법적 권한을 가진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언어 로 설명해야 한다.
CCPA(C4)	상담자/치료사는 평가 과정 전에 공정하고 타당한(fair and valid)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적, 공동체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familial, communal and cultural identity and/or membership) 을 포함한 내담자의 맥락에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대안적 조항	
KCPA (6.다.1 개정)	상담심리사는 심리평가 전에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를 구할 때에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 을 고려하여 검사의 목적과 용도, 비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KCA	기존 조항(7.22.4) 유지

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내담자의 심리를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상담자는 다양성 요인으로 인한 검사도구 한계를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윤리강령 조항은 표 10과 같이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

결과 보고 (Reporting)

ACA와 CCPA는 ‘결과 보고’ 세부항목을 통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할 때 주의해할 점을 다루고 있다. 표 11에서 ACA와 KCA는 내담자에게 평가과정 혹은 내

담자의 기준 적합성으로 인한 검사의 한계점을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담자는 검사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ACA, E.9.a; KCA, 7.22.4) 상담자는 도구 선정, 그리고 채점 및 해석 과정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내담자에게 제공할 때, 검사의 심리측정 한계를 명료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CCPA, C7; KCA, 7.22.4),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CCPA, C7). 이를 결과 보고 부문에도 적용하면 표 11의 대안적 윤리강령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표 10. 도구 선정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6.라.2)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배경 을 가진 내담자를 위한 심리검사 선택 시, 그의 사회문화적 맥락 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KCA(7.23.3)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 을 위한 검사 도구를 선정할 경우, 그러한 내담자 집단에게 적절한 심리측정 특성이 결여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한다.
ACA(E.8)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 규범 을 벗어나는 검사 도구는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검사 감독 및 해석 시에는 연령,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영성, 성적 지향, 사회경제적 위치 가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다른 관련 요소와 함께 검사 결과를 내담자의 관점에 적용시킨다.
CCPA(C10)	상담자/치료자는 다문화 요인 이 내담자의 수행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검사의 수행과 해석에 적절한 편의제공(appropriate accommodations) 혹은 대체 가능한 검사 도구와 방법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담자가 표준화된 도구와 절차의 규준에 부합되는 집단이 아니라면 검사 도구와 방법의 선택, 실시, 해석에 있어 신중하게 진행한다.
대안적 조항	
KCPA (6.라.2 개정)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배경 을 가진 내담자를 위한 심리검사 선택 시, 그의 사회문화적 맥락 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검사도구의 사용을 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KCA	기존 조항(7.23.3) 유지

표 11. 결과 보고 관련 윤리강령 비교 및 대안적 조항

학회	조항
KCPA(6.다.2)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내담자 혹은 내담자가 사전 동의한 수령인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집단으로 실시된 검사도 해당된다.
KCA(7.24.2)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검사 상황이나 피검사자의 규준 부적합으로 인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한점을 명확히 한다.
ACA(E.9.a)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내담자의 개인적 및 문화적 배경, 결과의 이해 수준, 결과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검사 상황 혹은 내담자의 문화적 규범 부적합으로 인한 타당도 및 신뢰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한점 또한 명확히 한다.
CCPA(C7)	상담자/치료자는 사전 동의 절차 하에서 검사의 결과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공유될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한다. 검사 결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담자의 발달적, 인지적, 지적, 언어적 능력에 적합한 언어로 전달한다. 상담자/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질문을 하고 명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대안적 조항	
KCPA (6.다에 신설)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를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결과가 검사 과정이나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신뢰도 및 타당도의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KCA	기존 조항(7.24.2) 유지

논 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다양성 관련 윤리강령의 변화와 방향을 살펴보고, 미국, 캐나다의 윤리 강령과 한국의 윤리강령을 비교하였다. 미국의 상담윤리강령은 사회정의의 추구를 원칙으로 하며,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다문화 및 다양성 관련 내용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특히, 2005년 ACA 윤리강령에서 다문화 감수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문화/다양성 역량, 옹호 및 지지의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이 외에 다른 영역에도 다문화 및 다양성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윤리강령은 사회적 책임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문화적 요소가 중시되어 왔다. 캐나다의 윤리강령 역시 개정을 거듭하며 다문화 및 다양성 관련 내용의 비중을 늘려왔고, 최근 이루어진 2020년 CCPA 개정안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고려하는 영역의 추가와 함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다양성 언급이 이루어졌다.

영역별 다양성 윤리강령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영역을 다루었던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밀보장 영역에서는 미국, 사전 동의 영역에서는 한국, 미국, 선물 영역에서는 한국, 미국, 상담 종결 및 의뢰에서는 미국, 슈퍼비전에서는 다문화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세 국가 모두, 슈퍼비전 관계에서는 미국, 캐나다, 평가 영역 전반에서는 세 국가 모두 다양성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국 상담 윤리강령에서의 다문화 및 다양성 추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상담 윤리강령의 영

역 전반으로 다문화 관련 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윤리강령 각 영역 별 국가 비교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다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비밀보장, 사전 동의, 선물, 종결 및 의뢰, 슈퍼비전, 평가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를 언급하는 영역이 사전 동의, 선물, 슈퍼비전(다문화 역량 교육),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다양성 및 다문화를 다루는 하위 영역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비밀보장, 종결 및 의뢰, 슈퍼비전과 상담자 역량 교육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비밀보장과 관련하여서는 ACA와 같이 상담자가 비밀보호와 정보공개에 대한 다양한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김윤정과 양은주(2020)는 북한 이탈주민이 지각한 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으로 북한 이탈주민 이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었던 점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북한 이탈주민 상담의 경우, 비밀 보장의 의미가 사회적 낙인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일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연구에 있어서도 비밀보장은 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는 내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아웃팅으로 이어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병철, 하경희, 2012). 반면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몇몇 민족 중에서는 비밀보장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Kaplan과 그의 동료들(2009)은 집단 의식이 강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미국에서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의 동료들 상담현장에 데려와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한 예를 제시하였다.

이 경우 상담자는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밀보장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내담자를 심각하거나 관찰 가능한 위해보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대해 다양한 문화 맥락적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적인 관계에 있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를 현행법 내에서 행해지지만 한다면 성적 자유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적 관념이 다른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현행법 내에 행해지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루밍 범죄와 같은 위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해석하여 비밀 보장의 원칙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담 윤리강령에는 비밀 보장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고려해야함을 언급해야 한다.

한편, 슈퍼비전에서도 다문화 가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이것이 다문화 역량교육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슈퍼비전은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의 강조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슈퍼비전은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다양성 이해 및 실천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Constantine, 1997). 또한 다문화 역량 교육은 슈퍼비전 이외의 다양한 상담 교육 과정이나 상담 자격 검정에서도 더욱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윤리강령에서 대학원 교과과정의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 상담에 대한 정규교과목 개설 등을 제시하여 초보 상담자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물의 경우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보편적인 감사의 표시로 여겨질 수도 있고,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큰 실례인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잘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Kaplan et al., 2009).

둘째,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한 상담 윤리가 요구된다. 토착민과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윤리강령은 각 국가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징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자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 남한 사회에서의 정서적 고립 및 적응 등의 같은 특수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윤정, 양은주, 2020). 최근 한국 상담영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KCA의 통일상담연구위원회(2019),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금명자, 주영아, 김상수, 김태성, 이자영, 2005) 등의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돕고, 이들에 대한 상담 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입과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이금순, 2003; 조영아, 2009),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 윤리강령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윤리강령의 다문화 관련 내용에서 탈북민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다문화 수용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탈북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윤리강령 개정 과정에서 있어서는 통일상담연구위원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들의 연구와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탈북민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지식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윤리강령에서는 다문화 및 다양성 가치를 다루는데 있어 탈북 내담자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탈북민 문제 외에 한국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상담윤리에서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더욱 다양한 가치의 수용과 존중을 추구하는 세계적·시대적 보편성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또한 윤리강령에서 더욱 새롭고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 캐나다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HKPCA, 2011; SAC, 2019; SPS, 2019; PAP, 2009),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며 차별 타파, 다양성 존중 등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민족, 성적 지향, 종교, 장애에 있어서의 차별을 지양해야 함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더욱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기 위해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세계관(SAC, 2019), 다양한 배우자 및 파트너 관계(ACA, 2014), 언어 유창성(SPS, 2019; CCPA, 2020)과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슈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내용을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루고 있지만, 단일화와 획일성이 증시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는 윤리강령이 아직까지 다양한 내담자의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상담 영역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적 지향 차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 갈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윤리강령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윤리강령의 영역으로 상담의 의뢰 및 종결이 대표적이다. ACA의 경우 상담의뢰와 관련해서 단지 상담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종결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여 이를 윤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지만, 한국 윤리 강령에서는 이를 상담자의 편견 극복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관련된 사례로, 2009년 미국에서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상담 전공 대학원생이 성소수자인 내담자를 다른 상담사에게 의뢰한 사건에 관해 법적 논쟁이 있었다. 법원은 상담사자가 성적 지향 차이로 내담자를 차별했다고 판결하였고, 학교는 학생을 상담과정에서 퇴출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12). 미국에서는 이후 2014년 윤리강령 개정에서 ‘상담자가 단순한 가치 차이로 내담자를 의뢰할 수 없음(ACA, A.11.b)’을 명시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Kaplan et al. 2017).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지향과 같은 가치 차이로 인한 의뢰나 종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한국 상담영역에서도 성적 지향 차이와 같은 다양한 가치 갈등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국내에서도 가치나 사상 차이에 따른 의뢰나 종결이 윤리적 위반으로 간주 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윤리강령에 포함 되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해당 사안은 상위법 제정 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입장을 수렴하기 쉽지 않겠지만, 학회차원에서 문제를 공론화하여 상담 장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문에서 언급한 성소수자 군인의 상담 사건 또한 문제의 윤리적 위반 여부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우리나라 윤리강령이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상담윤리강령에서 성적 지향과 같은 새로운 다문화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낱말이 다양해지는 새로운 가치와 사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회차원의 치열한 성찰과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존중을 고려한 한국 상담 윤리강령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윤리강령에서 원칙의 중요성은 윤리강령의 세부적인 영역과 조항들을 세워 나감에 있어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령에서의 원칙은 윤리강령의 실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Gilman, 2005). 미국과 캐나다 상담 윤리강령은 각 국가가 생각하는 주요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형평성에 기반을 둔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캐나다는 사회적 계약, 즉 사회의 지원을 받는 상담이 사회에 기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

기서 다루지 않은 캐나다의 심리 윤리강령(CPA, 2017) 에서도 4가지 주요 원칙(인간 존엄성 존중, 보호의 책임, 관계의 진실성,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각 국가가 제시하는 원칙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와 상담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윤리강령들의 조항들은 사회의 변화와 이면을 반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사회적 추세인 다양성과 다문화화를 필수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윤리강령은 각 서문에서 중시하는 가치들과 목적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역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명확한 원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윤리강령 또한 앞으로 상담영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반영하는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상담영역이 정착되고 확대되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와 상담의 관계를 고려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상담 윤리강령이 다문화 및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원칙을 정립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학회의 적극적인 성명서(position statement)제시 또한 요구된다. 최근 6월 미국은 반인종차별에 관한 성명서(ACA Anti-racism Statement, 2020)를 발표했고,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대적인 인종차별 시위를 반영한 것이다(ACA, 2020). 이 성명서는 상담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 비인간화를 타파하고자 하는 반인종차별주의의 입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윤리강령은 다양성 및 다문화를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영역과 사안마다 상담

학회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향하는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담 윤리강령에서 다양성 존중의 원칙의 정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명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 영역의 윤리적 갈등과 사안에 대한 다양성 존중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국제화라는 시대적 변동 속에서 급속하게 변화해 온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공존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상담 윤리에서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다양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담 윤리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의 다양성은 어떤 원칙과 가치에 기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원칙으로 삼은 사회정의와 형평성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가치규범에 근거 한다(이종수, 2009). 이를 상담 윤리의 다양성 맥락에서 적용해 볼 때, 상담 윤리는 상담 서비스의 배분이 소수자 내담자에게 불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담자가 개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회·문화적 편견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궁

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강진령 (2005). 한국 상담의 비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9(9), 23-42.

경향신문 (2016.05.09). [행복기행](10) 모자이크 사회, 밴쿠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697620> 에서 검색.

국민일보 (2015.08.05). [다문화가 경쟁력이다] 반대문화 주범 ‘단일민족’ 주입교육 ‘차별 코드’ 여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87683>에서 검색.

금명자, 주영아, 김상수, 김태성, 이자영 (2005).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III.

김석향 (2019).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김윤정, 양은주 (2020). 북한이탈주민 내담자와 남한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및 도움 되지 않은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117-145.

김중세 (2011).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11(2), 349-368.

김중혁, 황기식, 송문석 (2019).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 수용방안. 사회과학연구, 35(4), 177-202.

김춘희, 손은령 (2014).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6), 2209-2223.

동아일보 (2019.11.06).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중 역대 최고...베트남 출신 산모 최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6/98246224/1> 에서 검색.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

- 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 손승희 (2005).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 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74.
- 아시아경제 (2019.3.13.). 상담내용 유출돼 수사 받게된 해군... 병영상담관 '비밀유지'의무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1311345106261>에서 검색.
- 양미진, 이동훈, 고희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여성가족부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연합뉴스 (2020.02.17).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 사상 첫 돌파...6.6%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에서 검색.
- 월간중앙 (2016.01.17). [현장취재]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것.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9886> 에서 검색.
- 이금순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이중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 장인실, 김경근, 모경환, 민병곤, 박성혁 (2012).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 방기연 (2010). 상담자의 탈북주민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1(1), 1-28.
- 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수퍼비전 경험과 되고 싶은수퍼바이저 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71-1693.
- 최 미, 오은경, 최한나 (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5), 223-242.
- 최미희 (2017). 다문화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다문화학생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6(1), 1-29.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통일부 (2020.03).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currentpage>에서 검색.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http://www.krcca.or.kr/sub01_5.asp?menuCategory=1 에서 검색.
- 한국상담학회 (2016).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http://www.counselors.or.kr/KOR/kca/law3.php> 에서 검색.
- 한국상담학회 (2019.03.20). 통일상담연구위원회 1차 연구모임 안내.
<http://www.counselors.or.kr/admin/bbs/down.php?code=notice&idx=142634&no=1> 에서 검색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5).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resources/aca-code-of-ethics.pdf>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7).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statements: ACA statements on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about-us/social-justice>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20.06.22). *The latest news from ACA: ACA anti-racism statement*.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news/updates/2020/06/22/aca-anti-racism-statement>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 Canadian Counseling and Psychology Association (2017).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www.ccpa-accp.ca/wp-content/uploads/2014/10/CodeofEthics_en.pdf
- Canadia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 (2020).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www.ccpa-accp.ca/wp-content/uploads/2020/05/CCPA-2020-Code-of-Ethics-E-Book-EN.pdf>
-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Canadian code of ethics for psychologists*. retrieved from https://cpa.ca/docs/File/Ethics/CPA_Code_2017_4thEd.pdf
- Constantine, M. G. (1997). Facilitating multicultural competency in counseling supervision: Operationalizing a practical framework.. In D. B. Pope-Davis & H. L. K. Coleman (Eds.), *Multicultural aspects of counseling series, Vol. 7.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ssessme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supervision* (pp. 310-324).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Constantine, M. G. (2002).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Racial and ethnic minority clients'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ratings of their counselors' general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55-263.
- Constantine, M. G.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against African American clients in cross-racial counse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1-16.
- Esses, V. M., & Gardner, R. C. (1996). Multiculturalism in Canada: Context and current statu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8*(3), 145-152.
- Gilman, S. C. (2005). Ethics codes and codes of conduct as tools for promoting an ethical and professional public service: Comparative successes and lessons. *Prepared for the PREM, the World Bank*, 1-76.
- Green, M. S. & Dekkers, T. D. (2010). Attending to power and diversity in supervision: An exploration of supervisee learning outcomes and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Forum, 22*(4), 293-312.
- Hong Kong Professional Counseling Association (2011). *Code of ethics (2011 revision)*. Retrieved from <https://www.hkpca.org.hk/about/code-of-ethics/>
- Inman, A. G. (2006). Supervisor multicultural

- competence and its relation to supervisory process and outcom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1), 73-85.
- Kaplan, D. M., Francis, P. C., Hermann, M. A., Baca, J. V., Goodnough, G. E., Hodges, S., ... & Wade, M. E. (2017). New concepts in the 2014 ACA code of ethic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5(1), 110-120.
- Kaplan, D. M., Kocet, M. M., Cottone, R. R., Glossoff, H. L., Miranti, J. G., Moll, E. C., ... & Tarvydas, V. M. (2009). New mandates and imperatives in the revised ACA code of ethic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2), 241-256.
- Kocet, M. M. (2006). Ethical challenges in a complex world: Highlights of the 2005 ACA code of ethic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2), 228-234.
- Lee, C. C. (2014). *Multicultural issues in counseling: New approaches to diversity*. John Wiley & Sons.
- MBC (2007.08.18.). 유엔 ‘단일민족 극복’ 권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_D&mid=sec&sid1=115&oid=214&aid=0000046609에서 검색.
- Ng, E. S., & Metz, I. (2015). Multiculturalism as a strategy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case for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8(2), 253-266.
- Owen, J. J., Tao, K., Leach, M. M., & Rodolfa, E. (2011). Clients’ perceptions of their psychotherapists’ multicultural orientation. *Psychotherapy*, 48(3), 274-282.
- Phillips, J. C., Parent, M. C., Dozier, V. C., & Jackson, P. L. (2017). Depth of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dentities in supervision and supervisory outcom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30(2), 188-210.
- Prilleltensky, I. (1997). Values, assumptions, and practices: Assessing the moral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discourse and action. *American Psychologist*, 52(5), 517-535.
-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2009). *Code of ethics for Philippine psychologists*. Retrieved from https://www.pap.org.ph/sites/default/files/code_of_ethics_pdf.pdf
- Sheppard, G. W., Schulz, W. E., & McMahon, S. A. (1999). Code of Ethics. Canadian Counselling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457492.pdf>
- Shiles, M. (2009). Discriminatory referrals: Uncovering a potential ethical dilemma facing practitioners. *Ethics & Behavior*, 19(2), 142-155.
- Sinclair, C. (2020). Developing and revising the Canadian code of ethics for psychologists: Key differences from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de. *Ethics & Behavior*, 30(4), 249-263.
- Singapore Association for Counseling (2019).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Retrieved from <https://sacsingapore.org/membership/code-of-ethics/>
- Singapore Psychology Society (2019).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singaporepsychologicalsociety.org/wp-content/uploads/2019/07/SPS-Code-of-Ethics-1st-Editi on.pdf>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 A developmental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The New York Times (2012.02.03). *A Counselor's Convictions Put Her Profession on Trial*.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2/02/04/us/when-counseling-and-conviction-collide-beliefs.html>
- Watson, Z. E., Herlihy, B. R., & Pierce, L. A. (2006). Forging the link between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ethical counseling practice: A historical perspective. *Counseling and Values, 50*(2), 99-107.
- 원 고 접 수 일 : 2020. 07. 22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20. 11. 23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for Enhancing Diversity in the Korean Counseling Code of Ethics

Han-Byeol Kang

Sang-Eun Lee

So-Eun Hong

Sang-Min Lee

Korea University / Master student

Korea University / Professor

Korea ha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increased diversity in race,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and religion. Although client divers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matter.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clients' diversity,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consideration of diversity in the counseling code of ethics should be strengthened. The authors compared the counseling codes of ethic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the areas of confidentiality, informed consent, receiving gifts, termination and referral, supervision, and evaluation and assessment. Next,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counseling code of ethics are presented. Specifically, diversity should be emphasized in areas such as confidentiality, termination and referral, and supervision. Additionally, Korea should consider cultural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when strengthening its counseling code of ethics. Lastl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is code of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diversity.

Key words : diversity, multicultural, psychological counseling code of ethics, counseling ethic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